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민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330
----------	-------

발의연월일 : 2026. 1. 26.

발 의 자 : 김종민 · 안호영 · 최혁진
이재관 · 이수진 · 전종덕
박수현 · 문진석 · 박희승
천하람 · 김영호 · 위성곤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기술의 유출 방지와 보호를 위하여 실태조사, 보호지침 제정, 분쟁조정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형사벌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그런데 최근 기술거래 활성화와 외부 협력 확대에 따라 부정확한 방법으로 중소기업기술을 취득·사용 또는 공개하는 침해사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침해행위를 억제할 수 있는 직접적인 제재수단이 부재하여 실효적 예방 기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하여 실질적인 제재수단을 마련함으로써, 기술유출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활동과 공정한 거래질서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4조 등).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다.

제35조를 제36조로 하고, 제3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4조제1항에 해당하는 침해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침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4조(벌칙) <u><신 설></u>	제34조(벌칙) ①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생 략)	②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u><신 설></u>	③ 제1항에 따른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다.
<u><신 설></u>	제3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4조제1항에 해당하는 침해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침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5조(과태료) (생략)

제36조(과태료) (현행 제35조와
같음)